

지방세(도축세)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2006년 8월 23일 오후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국회의원 김영덕 • 주관|축산관련단체협의회

‘도축세 폐지하면 농가소득 14% 증가효과’

도축세는 보통세로 존치 의미 없어... 세수 비중도 미미

▲ 도축세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 사진왼쪽부터 김명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윤기호 농림부축산물위생과장,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김태용 회계사, 최영열 양돈협회장, 박희석 농협부천공판장장, 허덕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도축세 폐지를 위해 전 축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 김영덕 국회의원 주최 “지방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도축세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용 회계사는 ‘도축세 징

수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현재 무분별하게 늘어난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가능케 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농가가 부담한 도축세는 4백88 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도축세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



도축세 폐지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생각해왔던 문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도축세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물론 생산비 저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농가의 몫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이 부재하면 달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부문은 제도개선 및 폐지 등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몫일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



소득세 이외 도축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축세는 시·군 지방세의 평균 0.15%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축세는 폐지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축세 폐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가능한 한 관련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좌장 정영채 박사**



100년 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도축세가 1세기 동안 축산농가를 괴롭혀 왔다. 농업은 국토보존과 식량산업으로 세계적인 보호 산업이다. 축산업도 농업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다. 오늘 이 자리는 도축세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열린 자리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사**



지방세에서 도축세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수치화시켜 도축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도축세가 없다고들 하는데, 도축세 폐지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객관화하여 도축세 폐지에 대한 논리를 펴야 하지 않을까.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



도축장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축장은 매우 영세하다. 도축장 구조조정과 규모화는 필수적인데 도축세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 현재의 도축세는 과거 시행 시기에 있었던 원인이 소멸됐으며, 형평성에도 벗어났다.

**\*농협 부천공판장 박희석 장장**



도축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다른 업종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종합적으로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돈**